

# 세종자이 더시티

##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자세한 사항은 세종자이 더시티 홈페이지([www.xi.co.kr/sejong](http://www.xi.co.kr/sejong))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주자 모집공고와 상이할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가 우선 하오니 반드시 승인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개요

- 공급 위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6-3생활권 L1블록 (세종특별자치시 산을동 일원)
- 공급 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 지상 25층 24개동, 총 1,350세대(특별공급 244세대 포함) 예정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 (※ 팔호안의 수는 예비대상자 수)

구분	84A	84B	84C	84P	합계
장애인	2(10)	-	1(5)	-	3(15)
국가 유공자 등	2(10)	-	1(5)	-	3(15)
장기복무 제대군인	1(5)	1(5)	-	-	2(10)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5)	-	-	-	1(5)
중소기업 근로자	1(5)	1(5)	1(5)	-	3(15)
북한이탈주민	1(5)	-	-	-	1(5)
우수선수	-	1(5)	-	-	1(5)
입주기업종사자	-	-	1(5)	-	1(5)
소계	8(40)	3(15)	4(20)	-	15(75)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면적 및 배정 대상 세대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용 84A는 84A1, 84A2의 청약군으로 청약 신청시 84A로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은 84A1, 84A2 중 1개 탑으로 임의배정 됩니다.

※ 대상자 추천은 주택형별로 배정된 세대수(예비대상자 포함)까지 가능하며, 당첨자 선정 방법은 해당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릅니다.

※ 예비대상자 추천 여부는 해당기관에서 정하고, 예비대상자 추천 시 별도의 순번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주택형별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 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2020.02.28.)호 관련 예비입주자 비율을 종전 40%에서 500%로 확대하여 선정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 분양가 및 분양조건

- 현재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분양가격 및 분양조건의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이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청약 접수일정

※ 특별공급 청약 접수일정은 업무추진 중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일정	비고
입주자 모집공고	2021.07.16 (금)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간신문 및 세종자이 더시티 홈페이지 (<a href="http://www.xi.co.kr/sejong">www.xi.co.kr/sejong</a>)</li>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li> </ul>
사이버 견본주택	추후 공지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대체 운영예정 (사전 일반 관람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종자이 더시티 홈페이지 (<a href="http://www.xi.co.kr/sejong">www.xi.co.kr/sejong</a>)</li> </ul> </li> </ul>
특별공급 청약접수	2021.07.27 (화)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 08:00~17:30)</b></li> <li>• 견본주택 방문 접수시 (10:00 ~ 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만 가능(인터넷 청약 권장)</li> <li>- 구비서류 : 자격확인 서류 지참 또는 청약자 본인 공동인증서</li> </ul> </li> </ul>
당첨자 발표	2021.08.04 (수)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사 홈페이지 게재 (<a href="http://www.xi.co.kr">www.xi.co.kr</a>),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li> </ul>

※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만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등 인터넷 취약계층에 한하여 신청 구비서류(자격확인 서류) 지참 시 견본주택 방문접수 (10:00~14:00)가 허용됩니다. (은행창구 접수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 · 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입주자모집공고와 상이할 경우 입주자모집공고가 우선 하오니 반드시 승인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특별공급 청약접수도 인터넷 청약이 원칙입니다.

\* 청약 이전에 공동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네이버 및 은행)

※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청약 절차가 간소화 되었으나 신청 자격에 대한 검증은 증빙서류를 통하여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 청약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제53조에 따른 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 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 기간 (당사가 소명 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자격요건

# 세종자이 더시티

##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구분	내용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 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 · 호수를 결정합니다.</li> <li>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li> <li>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li> <li>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li> <li>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 · 호수를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li> <li>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 ·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li> <li>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 · 호와 미계약 동 · 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li> </ul>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한국부동산원(<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만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li> <li>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의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며, 견본주택 방문접수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li> <li>당첨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당첨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하여 주택소유 여부 및 과거 당첨사실 등을 전산 검색합니다.</li> <li>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li> <li>견본주택 방문접수시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의 적격 여부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li> <li>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li> <li>특별공급 청약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자료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li> <li>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li> <li>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 ·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li> <li>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 · 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예비입주자의 동 · 호수 배정일(당첨자발표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 내역은 무효 처리됨]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li> <li>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 · 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예비입주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과열지구내 청약시 1순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li> <li>「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부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12.11.)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특례에 따라 혼인 기간 내 주택 소유시 2018.12.11. 전 기준 주택을 처분하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경과시 2순위 해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거나, 그 세대에 속한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li> <li>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예시) ① 특별공급 당첨 + 특별공급 당첨 = 모두 부적격 ② 특별공급 당첨 + 특별공급 예비당첨자 선정 = 부적격, ③ 특별공급 당첨 + 특별공급 낙첨(신청 이력) = 부적격 (단, 노부모부양자,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주에게만 공급)</li> <li>「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신청자나 청약 신청자의 세대에 속한 자 중에 만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미성년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의 경우 주택공급 신청 시 최하층을 희망하는 때에는 우선배정 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고령자 세대 및 장애인 세대의 신청자가 3명 이상 미성년자녀의 세대보다 우선합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li> <li>신청 주택형별 세부사항들은 분양승인 이후 견본주택, 세종자이더시티 홈페이지(<a href="http://www.xi.co.kr/sejong">www.xi.co.kr/sejong</a>) 입주자모집공고 전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ul>

# 세종자이 더시티

##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특별공급 자격확인 서류

\* 만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계층 특별공급 대상자 중 견본주택 방문 청약 접수 시 아래 서류 지참 후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해당서류	발급 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 서류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li></ul>
	주민등록표초본(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li></ul>
	가족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li></ul>
	주민등록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운전면허증 또는 여권</li></ul>
	인감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주택공급신청(계약)용(본인 발급용)</li></ul>
	인감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공급 신청 시 생략</li></ul>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제외</li></ul>
추가 서류	복무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li></ul>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세 ”로 발급)</li></ul>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인감증명서	청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용도: 주택공급신청(계약) 위임용용(본인 발급용)</li></ul>
	인감도장	청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li></ul>
	주민등록증, 인장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li></ul>

#### \* 상기 서류는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간 내에 필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청약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 또한, 상기 서류 이외에 사업주체는 신청자격의 확인을 위해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청약 신청 시 청약 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 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대리 신청자가 착오로 청약신청을 잘못한 경우 그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자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돋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쇄 및 편집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 · 공포로 인해 내용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 신청 시 내용은 청약자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으므로, 청약 신청 전 반드시 상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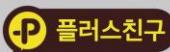
## 세종자이 더시티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자이앱(Xi APP)



KakaoTAL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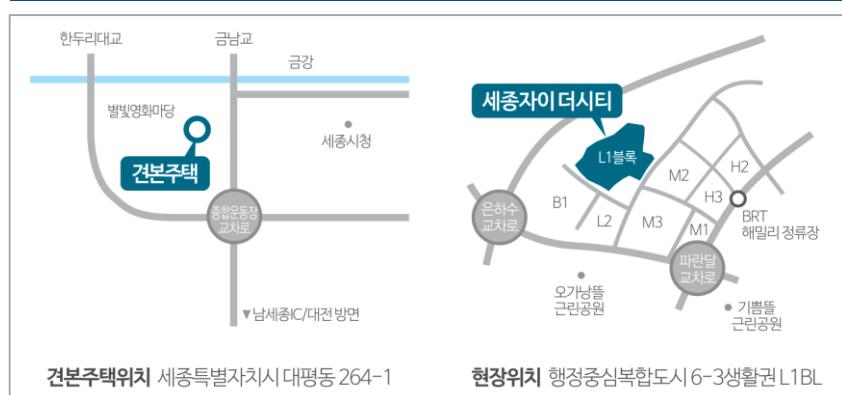
자이플러스  
친구추가



YouTube  
자이TV 구독



### 견본주택 및 현장 위치도



공급 세대수 : 총 1,350세대  
(전용 84㎡~154㎡P, 총 38개 청약타입)

홈페이지 주소 : [www.xi.co.kr/sejong](http://www.xi.co.kr/sejong)

시행/시공 : 지에스건설(주), (주)태영건설, 한신공영(주)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대체하여 운영될 예정입니다. (사전 일반 관람 불가)**

- 추후 당첨자 발표 이후 당첨자에 한해 관람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